

## 탈시설정책위원회

주 신 : 각 언론사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기자회견 보도자료

시설생활인의 탈시설 독립선언! “시설보호 말고 자립을 지원하라.”

발 신 : 탈시설정책위원회

발 신 일 : 2009년 12월 16일(수)

연 락 처      조백기 (탈시설정책위원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02-777-0641 / 010-3321-8464  
                  임소연 (탈시설정책위원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02-794-0365 / 011-9077-0915

“저는 21살부터는 18년 동안 시설에서만 살았습니다. 시설에서 나와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힘든기도하겠지만,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를 설레게 만듭니다. 저는 시대를 탈보하고, 혼자서 시장도 다니고, 친구를 만나러 지하철을 타러 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정상적으로 살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전파상을 차리는 것이 꿈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은 없지만 누워서만 지내야 했기 때문에 혼자서 라디오를 틀어보고 다시 조립하는 것을 반복해 본 적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겠지만,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위해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자립생활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황인현 님의 자립생활 계획 중)”

1.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탈시설정책위원회(위원장 박노현)는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학자, 법학자, 변호사, 의사, 장애-인권활동가, 사회복지실천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수용 중심의 사회복지시설정책에 반대하며 모든 사람들이 지역에서 자유롭고 보편적인 삶을 살기 위한 대안을 연구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시설내 인권확보, 시설 비리 척결 및 민주화 운동, 탈시설 운동을 지원해왔습니다.
3.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권리(이하 '서비스 신청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신청권'이 행사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이나 가족들의 뜻에 따라 시설에 수용되거나 조치되는 무기력한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을 뿐입니다.
4. 우리 위원회는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서 보편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국내 처음으로 '서비스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김포 향유의집(구 석암

1) 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베테스타요양원)의 황인현 님, '음성 꽃동네 희망의 집'의 윤국진·박현 님 이상 세분이십니다. 이분들은 짧게는 14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을 시설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시설 입소가 이루어진 이후 시설생활 내내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그동안 꿈꿔 왔던 지역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 시설보호가 아닌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생활 등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에 있으나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보통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한 길을 스스로 내고자 합니다.

5. 이번 서비스변경신청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보호당사자가 직접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그동안 사문화되어있던 '서비스신청권 및 변경신청권'을 작동시키고 나아가 시설생활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길을 여는 역사적인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행동에 함께 하셔서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남기게 될 중대한 사건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시설에서의 무기력한 삶을 떨치고 용기를 내어 지역사회로 나와 보통 시민으로 살아가려는 꿈을 향해 힘든 첫걸음을 내딛는 세분의 의지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기자회견 시설생활인의 탈시설 독립선언! “시설보호 말고 자립을 지원하라.”

- 일시 : 2009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노들장애인야학 강당(해화동 대학로 일과해극장 2층)
- 주관 : 탈시설정책위원회
- 주최 :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공동투쟁단 / 석암재단생활인권쟁취를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탈시설정책위원회
- 공동보호인단 :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마명원 변호사(법무사무소 지후), 장서연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여러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임소연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여는 발언    박노현 교수 (방송대 법학과 / 탈시설정책위원회 위원장)
  - 당사자발언    황인현 (김포 향유의 집 / 구 석암베테스타요양원, 서울시 양천구청 관할)  
                  윤국진 (음성 꽃동네 '희망의 집', 충북 음성군 관할)  
                  박 현 (음성 꽃동네 '희망의 집', 충북 음성군 관할)
  - 지지 발언    박정혁 (시설경험 자립생활 당사자)
  - 법적 의미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관련자료

## 1.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의 취지와 의미

사회복지시설<sup>2)</sup>은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곳입니다. 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사회복지시설은 국가가 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대신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봉사로 운영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에서 각종 비리와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 때문에,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가족의 버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장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볼모로 배를 채우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가두고 폭행하는 일부터, 강제노동이나 심지어 강제불임수술까지, 술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성실정신요양원, 은혜사랑의집, 바울선교원, 김포사랑의집 등 미신고복지시설과 성람재단, 프리웰(구 석암재단) 등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신고시설까지 수많은 비리사건 또는 인권침해사건이 일어났습니니다. 우리 역사는 시설의 문제가 합법이나 미신고시설이나, 서울이나 지역이나, 규모가 큰가 작은가를 떠나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을 볼모로 자신의 치부를 도모하는 일부 나쁜 사회복지시설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노인을, 버림받은 아동을 지역사회와 분리하여 시설에 살게하고 단체생활을 하게 하고, 오로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살게하는 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봉사와 헌신에 기초한 선한 사회복지시설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설의 보호대상이 된 당사자들의 삶에 주목할 뿐입니다. 그들의 삶이 과연 보편적, 정상적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도, 노인도, 아동도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이웃과 함께 살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에 살면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친구를 만나고, 재활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상화된 자립생활이야말로 그들이 원하고 우리 사회에 만들어야 할 원칙 아닐까요? 우리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삶이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시설 중심의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시설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이면 자립생활 지원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며 전문가의 연구결과입니다.

당신이 장애인이라면 이웃과 격리되어 수심명, 수백명 나아가 수천명을 수용한 시설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비록 단칸방이라도 자립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2) 여러 유형의 것이 있지만 여기서는 당사자가 거주하며 생활하는 사회복지 거주시설, 생활시설을 의미합니다.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시설을 감옥이나 군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군대라도, 아무리 좋은 시설의 감옥이라도 당신은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군대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감옥도 선고받은 기간동안 있으면 되지만, 시설에 들어간 사람은 그 동안 아무런 기약도 없이 10년, 20년, 3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그 사회의 양식과 수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동네에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돌아다니고, 우리는 노인이 함께 사는 공동가정을 이웃으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시골 구석에 그들을 격리시키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돕고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2008년 탈시설정책위원회(위원장 광노현)를 구성했습니다. 탈시설정책위원회는 시설에서의 삶과 투쟁을 해온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사회복지·법학 전문가들과 장애·인권운동 활동가 등이 모여 구성되었습니다. 탈시설정책위원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미신고 또는 개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 성람재단과 프리웰(구 석암재단) 등 대규모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 해소라는 단기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들을 극복하고 지역중심의 '탈시설-자립생활'이라는 중장기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의 시설관련 사건을 정리·분석하고, 미국의 올스테드(Olmstead v. LC) 판결 등 외국사례들도 연구하여 지역 중심의 '탈시설-자립생활'이라는 탈시설정책위원회의 중장기 목표를 위해 내부에 기획소송팀을 구성하고 논의를 거듭해왔습니다.

탈시설정책위원회는 김포 향유의집(구 석암베테스타요양원)의 황인현, 음성 꽃동네 '희망의 집'의 윤국진, 박현 님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짧게는 14년에서 길게는 20년 가까이 시설에서만 살아온 이들은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이러한 신청은 그 동안 유명 무실했던 사회복지사업법의 복지서비스 신청권을 발동시키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신청은 사회통합, 자립생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를 천명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원칙을 되살리는 행동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장애인이 '시설수용'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역중심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 양천구청 관할의 향유의집(구 석암베테스타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문제와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재단이사장과 시설장들이 법적 처벌을 받은 대표적인 대형 법인시설입니다. 또한 음평 꽃동네는 '가장 좋은 시설'로 '인권침해 문제가 없는 곳'으로 애기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형시설이고, 지역사회와



격리된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 살겠다는 선언은 한국 사회복지 역사에 상징적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과 귀추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2. 경과보고

○ 2008. 4. 25 : 탈시설운동의 장기적 전망과 구체적인 아젠다를 설정하기 위해 탈시설 정책위원회의 재구성과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

○ 2008. 9. 5 : 제 4차 회의에서 미국의 관련 판례 올스테드(Olmstead v. L.C.)<sup>3)</sup> 판결 분석,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소송지원 필요성 공유 및 탈시설과 관련한 기획소송 등을 수행할 별도의 기획단 구성 제안

○ 2008. 12. 12. 탈시설정책위원회 제8차 회의 및 모꼬지를 통해 그동안의 시설관련 사건을 정리·분석하고, 미국의 올스테드 판결을 연구하여 지역중심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소송기획분과 구성 및 정책기획소송 진행 결의

○ 2009. 4. 24.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제도 및 정책에서 시설보호권리는 보장하지만 시설에서 나와 탈시설-자립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의 '탈시설-자립생활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

○ 2009. 5월~6월. 기획소송팀 회의를 통해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기획소송에 대한 검토 및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추진 결의

○ 2009. 6. 4~8월. 20여년간 김포 향유의집(구 석암베테스타요양원) 살아온 장애인당사자 8인(이하 '마로니에 8인')이 시설을 나와 정부와 서울시에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요구하며 마로니에 공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62일간 노숙농성을 진행함.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과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3대 요구안(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주택 제공, 활동보조 생활시간 확대 대상제한 폐지)을 서울시가 수용할 것을 요구함.

○ 2009. 7. 10. 기획-소송 방향을 현재 시설에 생활하는 사람들 중 탈시설-자립생활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에 기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마로니에 8인'에 대한 소송지원을 논의하기로 함.

3) 1999 6. 22.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ADA)에 의해 장애인을 불필요하게 시설에 격리하는 것은 장애에 의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장애 당사자의 뜻에 따라 탈시설적인 방식으로 거주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판례임.

○ 2009. 7월~11월. 탈시설-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변경신청과 관련한 절차 및 법적 지원방안을 검토함.

○ 2009. 11월~12월 현재. 30여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 음성 꽃동네 '희망의 집' 윤국현씨, 박현씨, 김포 향유의집(구 석암베테스타요양원) 황인현씨 3인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진행하기로 함

○ 2009. 12. 16.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및 기자회견 진행.

○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복지욕구 조사, 보호 결정, 보호계획 수립, 보호실시 등의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기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함. 그 과정에서 실제 양천구청, 종로구청, 음성군 등이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제도를 어떻게 얼마나 잘 제공하고 있는지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실상을 밝혀내고자 함. 또한 각 지자체가 충분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며, 간담회와 토론회 그리고 방송 및 언론기고를 통해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사회의제화 하고자 함. 재가장애인인 시설장애인들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통해 본인들에게 적절하고 유효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며, 시설생활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마련도 진행하고자 함.

## 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의 삶과 욕구

○ 김포 향유의집(구 석암베테스타요양원) 생활인 황인현씨의 삶과 욕구

**“간단한 거지만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며**

**자유롭게 사는 거 시설에서는 못해요”**

황인현 / 김포 향유의집(구 석암베테스타요양원)

추재엽 양천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양천구청 관할의 사회복지재단 프리웰(구 석암재단)의 산하시설인 향유의집(구 석암베테스타요양원)에서 18년간을 생활하고 있는 황인현입니다. 저는 40세 지체장애



에 1급의 남성입니다. 태어날 때는 장애가 없었어요. 근데 자다가 경기를 했데요. 그걸 그냥 봐줘야하는데, 엄마가 애가 경기를 하니깐 병원에 데리고 갔데요. 그때 내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됐데요. 이후에 병원에 갔더니 앞으로 내가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생활한데요. 정말 집에서 매일 텔레비전만 보고, 음악만 듣고 그랬어요. 형제들은 다 학교 다니고 사회활동을 해서 같이 못 놀았어요. 매일 나가고는 싶었지만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삼육재활원에 갔더니 엄마한테 나 운동시키라고, 물리치료도 받으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출퇴근 했어요. 매일 엄마가 업고 재활원까지 갔는데, 버스가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차도 잘 잡지 못했고, 엄마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나는 좋았어요. 집에만 있다가 나가니까, 세상 구경하는 게 아주 좋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기 다 있잖아요.

삼육재활원에서 6개월 있었는데, 근데 나이가 차니까 만 데 가라고 통보가 왔어요. 거기는 18살 먹으면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병원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돈이 두배더라고요. 해서 나는 못 간다고 했더니 돈을 더 내고 기숙사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기숙사에 갔더니 이 돈을 가지고 못산데. 해서 집에서 돈이 없으니까 나와서 만 데 가자고 했어요. 결국 돈이 없어서 더 있을 수가 없었지요. 재활원에서는 휠체어 타고 내 마음대로 왔다갔다 했는데, 집에 오니 다시 간혀 지내야 했죠. 친구도 없고. 그때는 화장실도 집 밖에 있어서 그것도 힘들고. 엄마가 매일 대변치리를 해주셔야했고. 기분이 착잡했죠. 많이 우울했고. 그래서 다시 보내달라고 많이 울었어요.

3년 뒤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사람도 없고, 경제적 형편 때문에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큰형과 가족들에 의해 지금의 향유의집(구 석암베네스다요양원)으로 왔어요. 올 때 죽을 때까지 있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생활비 3천만원을 냈어요. 21살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있어요. 지내오는 동안 비리가 있다는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지낸 거였어요. 정부에서 피복비를 지원해주는데 우리 옷을 매번 나일론으로 된 싼 것만 사는 거예요, 그것도 체육복으로. 봄·여름·가을·겨울 다 마찬가지로였죠. 또 간식비를 챙긴다고 생각했죠. 예전엔 우유가 매일 나왔는데, 나오다가 안 나오고, 빵도 안 나오고 그러더니 감자랑 고구마만 간식이라고 주는 거예요. 또 야유회도 반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유회 비용으로 나온 돈도 챙겨야하니깐. 그렇게 계속 돈을 챙겨서 땅만 사고, 건물만 짓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서 수용시킬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 월급도 두 달 동안 밀렸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구청에서는 감사를 나와도 자기들끼리 막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물어봐야하는데, 비리가 있는데도 안 살피고 그냥 얼렁뚱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직원들과 함께 싸웠어요. 그래서 이부일 이사장과 제복만 원장이 처벌받게 되었어요. 올해에는 저랑 함께 생활하고 싸웠던 8명이 자립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저랑 시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시설의 규칙은 여전히 먹고, 자고, 싸고 매일같이 반복되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도 없어요. 저는 기술도 배우고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다 시간만 때우

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 타먹으려고요. 그것보다는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들어가서 (바깥에 나온) 얘기를 하면 자기들도 나오고 싶은데, 알고 싶고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석암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선생님이 바깥에 나가는 거 잘 안 해주고, 나가서도 잘 안 따라줘요.

저는 자립할거예요. 나와서 자유롭게 살 거예요. 돈도 벌어보고, 내 꿈이 어렸을 때부터 천과상 하는 거였어요. 집에 있으면서 하도 심심해서 누워서 라디오를 세 개나 조립했어요. 뜯었다가 원위치 하고 다시 반복 그런 거죠. 처음에는 안됐는데, 몇 번 하니깐 되더라고요. 그땐 완전히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그걸 해낸 거잖아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설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건이 안돼요. 간단한 거지만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며 자유롭게 사는 거 시설에서는 못해요.

추계엽 구청장님.

저는 석암 같은 시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저와 같은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필요해요. 가족의 도움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도 받지 못해 살림살이를 살 돈도 없어요. 임대료도 낼 수 없답니다. 공부도 하고 기술을 배우려면 충분한 활동보조서비스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도 자주 가야하고요. 힘든 일이겠지만, 열심히 기술도 배우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러한 꿈을 위한 길을 내딛을 수 있도록 꼭 자립생활의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긴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음성 꽃동네 '희망의 집' 생활인 윤국진씨의 삶과 욕구

##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처럼 인정받고 대접받으며 살고 싶어요”

윤국진 / 음성 꽃동네

박수광 음성군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꽃동네에서 19년간 생활하고 있는 윤국진입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사는 삶을 꿈꾸고 짧게나마 저의 살아온 이야기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안좋아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 사업이 잘 안되서 감방에 들어가있는 동안 아는 아줌마가 우리 형제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느날 아줌마가 저에게 “꽃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가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가 안가면 나중에 동생들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더군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늘 집에서만 생활해야 했고,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으니까요. 시설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애덕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꽃동네 와서 한 삼일은 밤마다 울었어요. 애덕의 집에서는 한달여 생활하다가 희망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설에서 살면서 좀 지나고 적응이 되니 ‘나 같은 사람은 살기 좋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제법 말도 잘하고, 꽃동네에 봉사 오는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직원들과도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것도 그랬고. 능력도 없는 내가 먹을 것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곳.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살 수 있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모 장애인단체를 통해 자립생활도 알게 되었고, 교육도 받았습니 다. 여름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충격이었어요. 다른 장애인이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 구나. 나는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중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한 칸에서 배신감도 밀려오더라고요. 아무도 나에게 시설 아닌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 곳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다 같이 꽃동네에서 살던 형이 1년 만에 시설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내가 내고 싶지만 낼 수 없었던 그 용기가, 그 선택이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여 시간을 보내다가 체험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제공하는 것 은 아니지만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설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집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잠시가 아닌 오랜 기간 머무르며 살 수 있는 공간.. 무작정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이 필요한데 당시 통장에는 8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에게 돈을 부탁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은 그런 제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반대하였고 결국 다시 시설에 눌러앉 게 되었습니다.

꽃동네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착잡했던 건 자립생활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책임져야하는데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우선 나가려면 집도 필요하고 활동보조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이 문제들이 걸리지 않았다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거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런 상담을 어디에 해야할지 막막했어요. 돈도 없는데...

앞으로 시설에서 나와 돈을 벌고 싶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걸 고민해 봤어요. 요즘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마음 맞는 친구들 3~4명 정도가 함께 살면서 조그맣게 쇼핑물 혹은 컴퓨터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면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고생은 좀 하겠지만 자리가 잡히고 나면 여유가 생기 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외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내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자립생활 교육을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개 돼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인데 왜 개 돼지가 되어야 하는지.. 나의 삶이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에서 나와 살고 싶어도 집과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박수광 음수군수님!!

우리고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처럼 인정받고 대접받으며 살다가 죽고 싶 습니다. 시설에서 나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음성 꽃동네 ‘희망의 집’ 생활인 박현씨의 삶과 욕구

## “불쌍한 장애인이 아닌 당당한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박현 / 음성 꽃동네 ‘희망의 집’

박수광 음성군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 꽃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는 27살의 박현입니다. 저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음성 꽃동네에서 생활한지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시설안의 무의미한 생활보다는 내안의 삶을 찾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설에 오기 전까지 저는 주로 집에 누워서만 생활을 했었어요. 휠체어도 없고 해서 나간다는 건 생각도 못했지요. 꽃동네 오게 된 건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셔서 낮에는 동네 아주머니가 봐주시고 그러셨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다보니까 알아보셨나봅니다. 저는 집에만 있다가 나가는 게 좋아서 그래서 꽃동네 오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꽃동네가 시설이라는.. 이 안에서만 먹고 자야한다는 건’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와보 니 달랐습니다. 처음 꽃동네에 와서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그래서 많



이 올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 당시는 가족이 있으면 꽃동네에 들어오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족이 꽃동네 앞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았지요. 저도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해서 꽃동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면회 온 '엄마'를 '이모'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엄마는 1년에 두어 번 정도만 오셨어요. 자주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때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규제가 강해졌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에서 직원으로 바뀌고 나서 오후 4시이후에는 면회도 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꽃동네를 나가 다른 친구들처럼 살고 싶었지만 엄마 속 썩이고 싶지 않고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도 죄송해서 힘든 내색 않고 조용히 숨죽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참다가 막상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막상 반대에 부딪치니 많이 서러웠습니다.

매일 똑같이 먹고 자고하는 생활을 이제는 더 이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저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시설에서 나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나 저와 같은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일도 하고 활동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함께 생활하던 지랑 같은 장애가 있는 형이 이곳을 나가서 자립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을 보게되었습니다. 저도 나가서 자립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성친구도 사귀고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형을 따라 시설에서 나가 같이 살려고 했는데 그 형이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저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꽃동네에 와서 한글을 배우게 됐어요. 그때는 학교에 가고 싶긴 했는데, 아무도 갈 수 있다 이야기 해 주지 않아 갈 수가 없었죠. 갈 수 있는 곳인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교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어요. 검정고시 같은 경우도 내가 시설장한테 "저 공부 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봐서 준비할 수 있었어요. 당시 대학교수가 꽃동네에서 일을 해 개강 전에는 1주일에 5일, 개강 후에는 1주일에 3~4일씩 7개월 반 동안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바빠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혼자 준비하려니 쉽지 않더라구요. 결국 포기했죠.

14년 동안 살아온 이곳을 나가 스스로 살 생각을 하면 저 역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선 살 곳도 필요하고 활동보조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로 집인 거 같아요. 저 같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 3~4명 정도가 함께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서 못다한 공부도 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장애인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뇌성마비 장

애가 있는 친구들을 돕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왜 변호사냐고요? 나처럼 시설에서만 갇혀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처럼...

박수광 음성 군수님!

많이 어렵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에서 나와 공부도 하고 싶고, 변호사도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꿈이지만 저도 꿈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시설장애인이 아닌 박현, 불쌍한 장애인이 아닌 당당한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시설에서 나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면 충분합니다. 임대주택 독채를 원하는 것도 아니며, 제가 생활할 수 있는 방과 여건을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 나.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제가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려면 최소한의 가재도구와 가구, 살림살이 같은 것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저는 18년 동안 시설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자립생활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탈시설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다. 활동보조

제가 자립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저의 자립생활에 충분한 정도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 라. 취업지원, 기술교육

저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배워 사회를 위해서 쓰고 싶고, 돈도 벌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를 위해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취업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 마. 의료 및 재활서비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제 건강상태를 진단받고,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사. 기타 정보제공

저는 이제까지 저와 같은 장애인에게 어떠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복지관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자세하게 정보제공을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뒤에 제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3. 결론

저는 어려서부터 누워서만 지냈습니다. 21살부터는 18년 동안 시설에서만 살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시설에 있다가 자립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시설에서 나와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힘들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를 설레게 만듭니다. 저는 시내를 활보하고, 혼자서 시장도 다녀오고, 친구를 만나러 지하철을 타러 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정상적으로 살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제 희망이 과분한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최소한의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과상을 차리는 것이 꿈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은 없지만 누워서만 지내야 했기 때문에 혼자서 라디오를 뜯어보고 다시 조립하는 것을 반복해본 적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겠지만,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위해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자립생활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제공 신청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								처리기간 20일 이내		
보호	성 명	윤 국 진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대 상 자	주 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1-45 꽃동네 (전화 : )								
가족사항	본인과 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학력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 소득	비 고	
주요문제 및 욕구 (중복표시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생계·경제적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장애·질병·의료 문제									
필요서비스 (중복표시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주거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가족·사회관계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기타(또는 세부사항 기재) : 자세한 내용은 별지 참조									
	<input type="checkbox"/> 1. 생활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2. 의료·재활서비스 <input type="checkbox"/> 3. 주거지원									
		<input type="checkbox"/> 4. 취업지원 <input type="checkbox"/> 5. 상담·후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6. 시설이용·입소								
		<input type="checkbox"/> 7. 기타(또는 세부사항 기재) : 자세한 것은 별지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신청인 성명 : 윤 국 진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대리인 : 변호사 임성택(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마명원, 변호사 장서연 (전화 : 02-6050-1646)										
음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소득·재산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계약서 등) 2. 건강상태 관련서류(건강진단서 및 검진서 등) 3. 기타 보호대상자의 주요문제 및 욕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가족관계등록부 2. 소득금액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윤 국 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 지]

1. 신청인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

가. 입소경위 및 가족상황

신청인은 15살 때인 1990년경에 꽃동네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약 19년간 '희망의 집'(중증장애인요양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4형제 중 장남으로 남동생 2명과 여동생 1명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신청인이 14살 때에 이혼했으며, 가정불화로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자 동네 이웃아주머니에 의해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입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성남에서 미성일을 하면서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소한 뒤 몇 해 전 까지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다가 2년전쯤 여동생이 찾아와 가족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 장애상황 및 경제상황

신청인은 뇌성마비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신청인을 부양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권이 없고, 매월 7만원씩 장애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통장과 도장 등은 담당 수사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주요문제 및 욕구 / 필요서비스

가. 탈시설, 자립생활 요구

신청인은 현재 아침 5시에 기상하여 6시 30분에 아침식사를 하고, 8시에 기도회를 한 후, 점심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자유시간을 갖고, 11시 30분에 점심식사를 하며 4시 30분까지 자유시간을 갖고 4시 30분에 저녁식사를 합니다. 시설 안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도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고, 먹고 자는 것도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생활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싶은데, 시설에서는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도 시설 내에 있는 몇몇 사람으로만 한정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현재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 나. 주거문제

신청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신청인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가족도 신청인을 부양하거나 지원할 형편이 안됩니다. 신청인은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임대주택은 신청인과 같은 휠체어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면 충분합니다. 임대주택 독채를 원하는 것도 아니며, 신청인이 생활할 수 있는 방과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면 공동생활가정(group home)과 같은 소수인원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형태의 주거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은 서울시였으면 좋겠고, 서울시가 안된다면 다른 대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 다.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신청인이 꽃동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려면 주거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가재도구와 가구, 살림살이 같은 것도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19년 동안 시설에서만 살았고, 몸도 불편하기 때문에 자립생활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인의 수입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라. 활동보조

신청인은 뇌성마비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청인이 자립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자립하는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 마. 의료 및 재활서비스

신청인은 특별한 질병은 없습니다. 다만, 뇌성마비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물리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합니다.

#### 바. 교육제공

신청인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공부를 해서 장애인 인권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설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사회에 나간다고 생각하니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신청인이 장애인 인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 기타 정보제공

신청인은 장애인이 자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복지판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같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3. 결론

신청인은 15살 때인 1990년경에 꽃동네에 입소하여 현재 34살이 되도록 약 19년간 시설에서만 살았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을 도와준 꽃동네 모든 분들에게 진정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청인이 꽃동네를 나오고자 하는 이유는 시설이라는 곳의 한계 때문입니다. 시설에서의 삶은 개인이 주체가 된 보편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꽃동네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신청인은 3000여명이나 되는 보호대상자 중의 하나로서, 음성이라는 시골에서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단체생활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신청인이 시설에서 나와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청인은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헤쳐 나가고 싶습니다. 신청인은 일



반적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끼는 그러한 삶을 누려 보지 못했습니다. 신청인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정상적으로 살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희망이 과분한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인이 한 인격체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08.11.5>

(앞 쪽)

사회복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이내	
번호	성명	박현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자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1-45 꽃동네 (전화 : )									
가족사항	본인과 의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학력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 소득	비 고		
주요문제 및 욕구 (중복표시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생계·경제적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주거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기타(또는 세부사항 기재) : 자세한 내용은 별지 참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장애·질병·의료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가족·사회관계문제						
필요서비스 (중복 표시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생활비 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의료·재활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주거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취업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상담·후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6. 시설이용·입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7. 기타(또는 세부사항 기재) : 자세한 것은 별지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2009년 12월 16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성명 : 박현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대리인 : 변호사 임성택(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마명원, 변호사 장서연                      (전화 : 02-6050-1646)</p> <p>음성군수 귀하</p>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계약서 등) 2. 건강상태 관련서류(건강진단서 및 검진서 등) 3. 기타 보호대상자의 주요문제 및 욕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1. 가족관계등록부 2. 소득금액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박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 지]

1. 신청인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

가. 현 거주지 및 가족상황

신청인은 13살인 1995년경에 꽃동네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약 14년간 '희망의 집' (심신장애인요양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4형제 중 차남으로 누나는 17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고, 남동생 1명과 여동생 1명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충북 보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공사관에서 막노동을 하고, 어머니는 어린이집 주방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장애상황 및 경제상황

신청인은 뇌병변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부모님도 생활이 넉넉한 형편이 못되기에 신청인을 부양하거나 지원할 여력은 없습니다.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권이 없고, 매월 7만원씩 장애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통장과 도장 등은 담당 수사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주요문제 및 욕구 / 필요서비스

가. 탈시설 및 자립생활

시설 안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자야합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려고 하여도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생활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싶은데, 시설에서는 그렇게 안됩니다. 신청인의 대인관계도 점점 협소해 지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현재 시설에서 나와 자율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나. 주거문제

신청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가족도 신청인을 부양하거나 지원할 형편이 안됩니다. 신청인은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임대주택 독채를 원하는 것도 아니며, 신청인과 같은 휠체어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면 공동생활가정(group home)과 같은 소수인원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형태의 주거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은 서울시였으면 좋겠고, 서울시가 안된다면 다른 대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신청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려면 최소한의 가재도구와 가구, 살림살이 같은 것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14년 동안 시설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자립생활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인의 수입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 활동보조

신청인은 뇌병변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휠체어 없이는 앉지도 못합니다. 신청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인이 자립하는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마. 의료 및 재활서비스

신청인은 특별한 질병은 없습니다. 다만, 뇌병변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물리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합니다.

사. 교육제공



## 5.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왜 또 어떻게 하나요? (7문 7답)

###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과 이에 따라 당사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서비스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1. 현재를 살아가는 시설생활인의 삶은 어떠한가요?

장애인생활시설은 2008년 기준으로 총 347개소에 22,2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설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시설이 33개소(2,292명), 시각장애인시설 14개소(784명), 청각장애인시설 11개소(546명), 지적장애인시설 144개소(9,192명), 중증중요양시설 136개소(8,981명), 장애영유아시설 9개소(455명)입니다. 미신고시설 750여명,<sup>4)</sup>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약 10만여명을 포함하면 장애추정인구 210만 명의 2%정도의 사람들이 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선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뜻에 따라 시설에 입소합니다. 일단 입소가 이루어지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시 지역으로 나오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을 통해 사회복지권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시설을 나가 지역으로 돌아가기 위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거주인들이 ‘지역에서 보통사람들과 같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지만’ 아무도 이들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특성상 집단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설에서의 삶은 6시 기상, 7시 아침식사, 12 점심식사, 5시 저녁식사, 8-9시 소등이 반복됩니다. 외출과 면담조차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17,237명에 이르지만 대부분 여성과 남성이 분리된 채 이성교제나 직업 등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시설거주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범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설에서 나오려는 윤국진씨, 박현씨, 황인현씨의 경우도 어려서 가족에 의해 시설에 들어온 이후로 20여년을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헌신적으로 돌봐온 시설종사자들에게 정도 들고 고맙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통사람들처럼 지역에서 살면서 더 늦기 전에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는 자립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 2. ‘탈시설-자립생활’하려는 시설장애인은 얼마나 되나요?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4) 2009년 4월 현재 110개소 2456명중 장애인시설 31개소 734명

신청인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2년전 어느 교수님께서 7개월 반 동안 검정고시 준비를 도와주셨고,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단순히 밥 먹고 노는 것에 무의미함을 느끼며 좀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 아. 기타 정보제공

신청인은 이제까지 저와 같은 장애인에게 어떠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복지관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같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자세하게 정보제공을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뒤에 체계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3. 결론

신청인은 혼자서는 앓을 수도 없는 뇌병변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휠체어가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신청인은 어머니 손에 이끌려 13살 때인 1995년경에 꽃동네에 입소하여 현재 27살이 되도록 약 14년간 시설에서만 살았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을 도와준 꽃동네 모든 분들에게 진정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청인이 꽃동네를 나오고자 하는 이유는 시설이라는 곳의 한계 때문입니다. 시설에서의 삶은 개인이 주체가 된 보편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꽃동네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신청인은 3000여명이나 되는 보호대상자 중의 하나로서, 음성이라는 시골에서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단체생활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신청인은 시설 외에 다른 곳은 거의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신청인은 하루하루 똑같이 반복되는 삶에 무의미함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신청인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정상적으로 살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신청인의 희망이 과분한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인이 최소한의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우선 시설에서 나가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와 소득지원, 활동보조, 의료, 직업재활, 문화와 여가 등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합니다. 개별적 주거지원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소규모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 경우는 자립홈이나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4명 정도가 생활하는 거주시설로 전환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랫동안의 시설생활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적응하기 위한 체험홈, 사회적응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복지선진국가들에서는 일상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제공과 개별적 사례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지난 2008년 장애인생활시설의 거주인들에게 시설을 나가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2008년 서울시, 2009년 부산시에서 각 지자체 관할의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육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38개 장애인생활시설, 3,252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는 질문에 응답 인원 1,073명 중 57%가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주거 및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시설에서 나가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70%가 넘습니다. 부산시도 서울시와 별반 다름없이 응답자의 57% 이상이 시설에서 나가 자립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높은 응답율은 시설거주 장애인이 더 이상 시설에서 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고 싶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과하면 안되는 것은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람만의 탈시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표 11] <서울시정개발원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 연구' 중 퇴소 희망에 대한 응답>

		퇴소희망	주거제공시 퇴소욕구	퇴소이지	주거 및 서비스 지원시 퇴소희망
무료 이용자	(응답사례수)	(964)	(963)	(959)	(265)
	있다	56.3	53.6	43.6	69.4
	없다	28.8	29.4	34.1	15.8
	응답불가/거부	14.8	17.0	22.3	14.7
전체사례	(응답사례수)	(1,073)	(1,071)	(1,067)	(290)
	있다	57.0	54.2	44.1	70.3
	없다	28.9	29.5	34.1	16.2
	응답불가/거부	14.1	16.3	21.7	13.4
계		100.0	100	100.0	100.0

시설거주 장애인이 탈시설하는 것에 있어 호소하는 어려움은 '마땅히 살만한 집'과 '생활비' 그리고 '활동보조'입니다. 서울시 '탈시설육구조사'에서도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주거, 소득, 활동보조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표 12] <서울시정개발원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 연구' 중 퇴소를 위해 필요한 도움에 대한 응답>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인연	간질	전체
(응답사례수)	134	49	44	7	1	197	12	1	1	446
주거	46.3	55.1	34.1	42.9	100.0	59.4	50.0	100.0	100.0	52.2
생활보조	51.5	49.0	56.8	57.1	-	43.1	41.7	100.0	-	47.8
도우미	47.8	53.1	50.0	-	-	25.4	33.3	-	-	37.2
일자리	23.1	22.4	18.2	57.1	100.0	44.2	58.3	-	-	33.4
여가,취미	3.0	2.0	2.3	28.6	-	5.6	-	-	-	4.3
편의시설	6.0	2.0	11.4	-	-	1.0	-	-	-	3.6
보건의료	4.5	2.0	6.8	-	-	2.5	-	-	-	3.4
교통서비스	3.0	4.1	6.8	-	-	0.5	-	-	-	2.2
복지서비스연계	2.2	2.0	4.5	-	-	1.0	-	-	-	1.8
재활보조기기	3.0	-	-	-	-	1.0	-	-	100.0	1.6
편견해소	1.5	-	4.5	-	-	0.5	-	-	-	1.1
생활정보제공	-	2.0	-	14.3	-	0.5	-	-	-	0.7
복지시설 공급	-	-	-	-	-	0.5	-	-	-	0.2

3. 이번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의 취지와 의미는 무엇인가요?

☞ 우리 법은 장애인의 '사회통합', '자립생활', '지역사회에서의 보편적 삶'을 근본적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현실은 다릅니다.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장애인들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서 보호받는 단체 중 한명으로 살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것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제기하는 법적 신청입니다. 10년 넘게 시설에서 보호대상자로 격리되어 보호를 받던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이웃들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시설중심의 복지정책을 오래 전에 폐기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청이 시설중심의 후진복지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의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2003년 법률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가 권리임을 명문으로 규정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자세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사회복지의 현실에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깨워 사회복지서비스가 당사자의 관점에서, 당사자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첫발이 된다는 것이 이번 신청의 또 하나의 의의입니다. 우리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욕구를 자세히 조사하여, 개별화된 계획을 세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바랍니다. 또한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를 실시하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국가의 법적 의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 4.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의2를 보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 친족 등이 관할 행정청에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가 관할 기관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면(제33조의2), ② 관할 기관은 복지요구를 조사한 후(제33조의3), ③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고(제33조의4), ④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며(제33조의5), ⑤ 그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제33조의6).

이 규정들이 도입되면서 국가의 '조치제도'라는 틀 안에 머물러 있던 사회복지서비스가 비로소 권리의 영역으로 한 걸음 전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에 의한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권리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복지지는 여전히 당사자의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 위 절차 규정들은 살아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롱에 처박힌 이 조항들을 꺼내 살아 움직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규정들에 따라 당사자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섬세하게 제공되기를 희망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일반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개별 복지서비스에 관하여 위 규정들이 적용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만일 그 동안 행정청이 개별 복지법을 핑계로 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 위반이며,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 제도의 구체적 실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5.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이 접수되면 어떤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나요?

☞ 신청을 받은 관할기관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당사자의 복지요구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합니다(복지요구 조사). 이 때 당사자 및 그 친족뿐만 아니라 지역안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의견 청취).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대상자별로 개별화된 보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대상자별 보호계획). 복지계획은 단기(6개월 미만)와 장기(6개월 이상)의 목표를 나누고, 단기와 장기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절차는 획일적인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대상자 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헤아려 개인에 따라 장단기로 서비스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별화된 보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복지서비스는 이렇게 작성된 개별화된 보호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복지서비스를 실시할 때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특히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6. '탈시설-자립생활'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탈시설-자립생활'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터잡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재가복지, 자립생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은 첫째, '시설수용'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가정봉사서비스 및 주간·단기보호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탈시설, 자립생활, 지역복지, 재가복지를 원칙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취지에 관하여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이 탈시설의 관점에서 규정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정책은 일부의 보호대상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격리·수용정책의 한계와 역효과가 지적되면서 문제가 있는 개인이나 가족을 시설수용을 통해 격리하기보다는 가정에서 거주하면서 가정방문서비스와 지역사회내 이용 또는 통원시설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하는 등 지역사회내에서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자는 개념으로 재가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동 조항들은 시대적 요청인 탈시설과 시설서비스의 대안으로써 재가복지서비스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임.

장애인복지법도 탈시설, 자립생활이 복지정책이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규정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법은 법의 목적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기본이념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탈시설, 자립생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4



장은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단기보호서비스 :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예의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과건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 오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과 함께 실제 양친구청과 음성군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연도별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건수 및 직권신청건수(제33조의2 제2항 관련), △보호결정건수, 보호결정을 하는 경우 보호유형의 내용과 각 건수, 특히 보호결정 중 주거지원 결정건수(제33조의4 관련), △보호계획 수립건수, 보호계획 수립한 경우 그 사례 및 내용(제33조의5 관련), △보호계획 평가여부(제33조의5), △보호방법의 구체적 내용, 현물제공 원칙이 지켜지는지, 어떤 현물이 제공되는지(제33조의7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의 제공현황과 실태, 관련 지침(제33조의7 관련) 등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제도의 운영현황과 그 허구성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서비스 변경신청 이후에도 신청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양친구청과 음성군청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청자의 사회복지욕구를 자세히 조사하고, 당사자와 친족·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과 유형을 정하며,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지 살펴야 합니다. 이는 법이 정해놓은 절차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당한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불충분한 보호계획이 작성되었을 때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송절차에서 법원의 사법적극주의가 발동된다면 사회복지의 권리화는 더욱 실질화될 것입니다.

참자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권리로 인정되고, 권리의 영역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마련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우선 활발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와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관한 설명과 홍보, 안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의 사회의제화를 통해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제도의 적극적 이용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6.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서비스 신청에 따른 제공절차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의2)**

